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337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30일

발 의 자: 이숙자, 김성준, 김춘곤,
박 석, 박성연, 박수빈,
송경택, 윤영희, 이병도,
이상욱, 이새날, 이성배,
전병주 의원(13명)

1. 주문

-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2. 제안이유

-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○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
○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

○ 출석 일시 : 2025.11.3.(월), 11.18.(화), 11.20.(목) ~ 21.(금), 12.16.(화), 12.23.(화)
〈6일〉

○ 출석 대상

[서울특별시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,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,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자

[서울특별시교육청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